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기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36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9.

발 의 자 : 김기표 · 문금주 · 권철승
한준호 · 한민수 · 맹성규
이연희 · 송재봉 · 박홍배
김성희 · 김남희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택임대차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

그러나, 주택의 관리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. 이로 인해 현행법에 규정된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(5%)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,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, 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7조의3 신설).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조의3(관리비 내역의 제공) 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리비 내역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7조의3(관리비 내역의 제공) ①</u> <u>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</u> <u>임대인에게 건물의 유지관리를</u> <u>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</u> <u>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</u> <u>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</u> <u>을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</u> <u>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</u> <u>받은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</u> <u>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</u> <u>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</u> <u>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</u> <u>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